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8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기요양요원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시책 마련	3

I. 개요

1.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78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5. 4.
- (3) 회 부 일 : 2026. 5.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요원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시책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⑥ (생략) <신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령¹⁾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급여제공시간 또는 장기요양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③제1항에 따른 제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급 및 급여제공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1년간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지출비율’²⁾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³⁾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유형별 인건비 지출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제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제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제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6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2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6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9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7.0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7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2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1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5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6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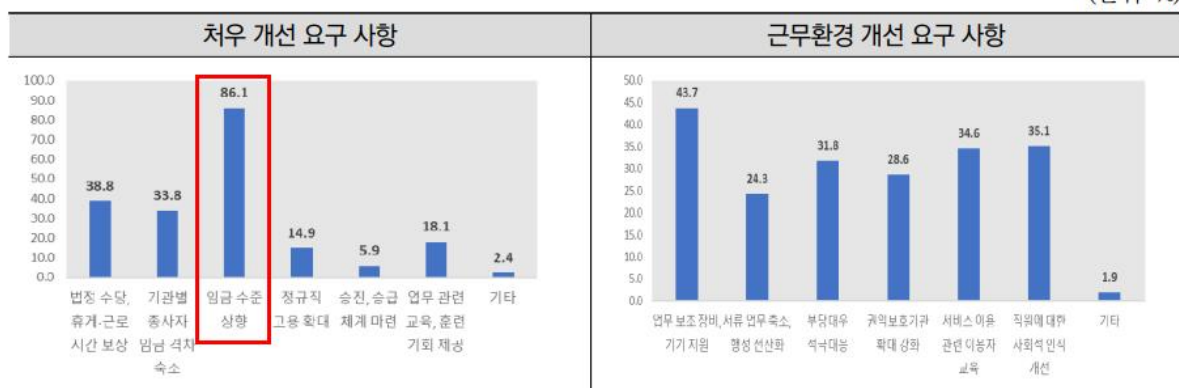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임.

- 따라서 공단은 매월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급여유형별 정해진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연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그런데 이와 같은 인건비 지출비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관련한 요구사항 1순위는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임금수준과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은 137.3만원으로 나타났음⁴⁾.

<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요구사항 >

[그림 7-78] 요원의 정책개선 요구사항

(단위: %)



주: 처우 개선 요구 사항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 사항은 1순위+2순위로 산출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2026.8.)

4) 동 실태조사에 따른 때 월평균 근무시간은 99.2시간으로 나타남.

□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⁵⁾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권고 기준표와 수당 기준표 등을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권고 기준표 / 수당 기준표) >

별표 1. 2026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직위 (호봉)	생활시설 (사회,노인) 이용시설,사회복지 (장애인)이용시설,일반직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관장 관장	-	부장 1급	과장 2급	선임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4급	-	-	-
			사무국장					5급		
1호봉		2,980,600	2,814,200	2,683,200	2,477,200	2,360,100	2,281,800	2,232,300	2,225,400	2,197,000
2호봉		3,082,400	2,906,400	2,769,600	2,538,600	2,416,400	2,324,300	2,296,400	2,264,500	2,222,100
3호봉		3,186,800	3,011,200	2,870,500	2,606,200	2,485,000	2,366,500	2,335,000	2,308,600	2,261,100
4호봉		3,305,300	3,113,700	2,973,900	2,712,200	2,553,200	2,411,500	2,380,400	2,351,200	2,302,700
5호봉		3,440,900	3,230,900	3,095,900	2,824,500	2,621,900	2,475,400	2,439,000	2,399,600	2,343,500
6호봉		3,582,800	3,358,400	3,221,100	2,940,500	2,717,800	2,538,700	2,509,400	2,440,300	2,396,200
7호봉		3,724,600	3,485,400	3,345,900	3,061,500	2,815,600	2,633,500	2,606,600	2,524,700	2,435,800
8호봉		3,871,200	3,631,900	3,489,100	3,183,000	2,918,600	2,737,600	2,702,000	2,615,600	2,500,200
9호봉		4,018,900	3,778,400	3,637,600	3,301,000	3,037,600	2,835,500	2,782,200	2,689,400	2,579,300
10호봉		4,159,300	3,921,300	3,778,200	3,426,800	3,137,400	2,921,200	2,870,900	2,783,500	2,667,700
11호봉		4,310,200	4,051,900	3,915,700	3,542,900	3,237,200	2,997,200	2,940,100	2,851,500	2,736,000
12호봉		4,437,500	4,170,300	4,027,400	3,647,900	3,326,300	3,062,600	3,009,300	2,928,400	2,802,700
13호봉		4,556,000	4,275,500	4,132,400	3,739,600	3,401,300	3,125,400	3,063,800	2,996,600	2,872,800
14호봉		4,652,800	4,374,200	4,231,300	3,828,600	3,482,900	3,189,500	3,112,300	3,035,600	2,925,900
15호봉		4,750,300	4,468,200	4,326,700	3,914,000	3,561,300	3,255,800	3,171,500	3,070,000	2,972,100
16호봉		4,842,600	4,558,300	4,402,200	3,994,600	3,636,700	3,328,000	3,226,400	3,129,800	3,018,100
17호봉		4,929,200	4,634,500	4,481,600	4,071,400	3,707,600	3,399,600	3,278,900	3,188,400	3,076,100
18호봉		5,011,100	4,712,700	4,561,200	4,146,100	3,775,900	3,467,900	3,341,200	3,246,900	3,132,500
19호봉		5,087,700	4,787,300	4,632,100	4,212,000	3,839,400	3,529,400	3,402,400	3,296,500	3,192,200
20호봉		5,156,000	4,858,100	4,700,700	4,277,800	3,901,200	3,589,300	3,464,100	3,344,300	3,242,500
21호봉		5,223,300	4,921,800	4,767,900	4,338,700	3,964,000	3,643,100	3,519,000	3,401,500	3,299,100
22호봉		5,287,900	4,981,600	4,829,900	4,397,700	4,018,500	3,697,400	3,568,800	3,466,200	3,364,200
23호봉		5,348,200	5,041,500	4,888,800	4,453,600	4,070,900	3,747,100	3,626,000	3,533,200	3,428,600
24호봉		5,404,900	5,098,900	4,943,900	4,502,900	4,121,000	3,796,000	3,674,500	3,595,400	3,492,000
25호봉		5,460,400	5,151,500	4,998,800	4,551,900	4,174,400	3,842,500	3,725,400	3,652,800	3,555,900
26호봉		5,505,800	5,202,700	5,046,700	4,599,700	4,221,600	3,885,100	3,770,900	3,703,100	3,615,100
27호봉		5,552,100	5,246,800	5,091,700	4,640,000	4,260,000	3,921,800	3,807,600	3,752,400	3,664,400
28호봉		5,592,400	5,281,200	5,132,200	4,680,800	4,300,400	3,957,900	3,833,300	3,786,500	3,701,100
29호봉		5,623,300	5,313,200	5,166,100	4,718,300	4,337,900	3,992,800	3,853,700	3,824,700	3,739,500
30호봉		5,649,300	5,346,400	5,202,100	4,753,400	4,371,900	4,025,800	3,874,600	3,848,100	3,773,500
31호봉		-	5,359,900	5,235,300	4,785,000	4,405,000	4,057,900	3,898,000	3,887,700	3,799,800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축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3,266,7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직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80%씩 연 2회, 실과 추석이 숙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직계 존속·비속 등) : 1명 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 상임금의 1/200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기본급표 작성

※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 이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자료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이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하는데⁶⁾,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⁷⁾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복지, 재가복지 등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즉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⁸⁾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적계약을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통해 종사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점과 장기요양보험수가를 통해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자료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만일 해당 시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일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준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결정된 이후에도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출비율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202266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사된 바 있으나, 사적 계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의결된 바 있음.

□ 한편,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은 137.3만원이고, 직종별로 127.3만원~236.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해(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본급 권고기준은 기능직 1호봉 212.3만원에서 원장 30호봉 545.8만원에 이릅니다.

< 2025년 장기요양요원 임금 통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 장기요양요원 임금 통계			
직종	월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임금(만 원)	응답자(명)
요양보호사	93.0	127.3	4,064
사회복지사	162.3	236.9	265
간호(조무)사	147.5	220.5	147
물리(작업)치료사	155.6	234.5	23

*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780페이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
 ** 급여유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별표 1.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직위 (호봉)	생활시설 (사회·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	원장	- 관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부장 1급	과장 2급	선임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4급	5급	-	-
1호봉		2,879,800	2,719,000	2,592,400	2,393,400	2,280,200	2,204,600	2,156,800	2,150,100	2,122,700
2호봉		2,978,100	2,808,100	2,675,900	2,452,700	2,334,600	2,245,700	2,218,700	2,187,900	2,146,900
3호봉		3,079,000	2,909,300	2,773,400	2,518,000	2,400,900	2,286,400	2,256,000	2,230,500	2,184,600
4호봉		3,193,500	3,008,400	2,873,300	2,620,400	2,466,800	2,329,900	2,299,900	2,271,600	2,224,800
5호봉		3,324,500	3,121,600	2,991,200	2,728,900	2,533,200	2,391,600	2,356,500	2,318,400	2,264,200
6호봉		3,461,600	3,244,800	3,112,100	2,841,000	2,625,800	2,452,800	2,424,500	2,357,700	2,315,100
7호봉		3,598,600	3,367,500	3,232,700	2,957,900	2,720,300	2,544,400	2,518,400	2,439,300	2,353,400
8호봉		3,740,200	3,509,000	3,371,100	3,075,300	2,819,900	2,645,000	2,610,600	2,527,100	2,415,600
9호봉		3,882,900	3,650,600	3,514,500	3,189,300	2,934,800	2,739,600	2,688,100	2,598,400	2,492,000
10호봉		4,018,600	3,788,600	3,650,400	3,310,900	3,031,300	2,822,400	2,773,800	2,689,300	2,577,400
11호봉		4,164,400	3,914,800	3,783,200	3,423,000	3,127,700	2,895,800	2,840,600	2,755,000	2,643,400
12호봉		4,287,400	4,029,200	3,891,200	3,524,500	3,213,800	2,959,000	2,907,500	2,829,300	2,707,900
13호봉		4,401,900	4,130,900	3,992,600	3,613,100	3,286,200	3,019,700	2,960,100	2,895,200	2,775,600
14호봉		4,495,400	4,226,200	4,088,200	3,699,100	3,365,100	3,081,600	3,007,000	2,932,900	2,826,900
15호봉		4,589,600	4,317,100	4,180,300	3,781,600	3,440,800	3,145,700	3,064,200	2,966,100	2,871,500
16호봉		4,678,800	4,404,100	4,253,300	3,859,500	3,513,700	3,215,400	3,117,200	3,023,900	2,916,000
17호봉		4,762,500	4,477,700	4,330,000	3,933,700	3,582,200	3,284,600	3,168,000	3,080,500	2,972,000
18호봉		4,841,600	4,553,300	4,406,900	4,005,800	3,648,200	3,350,600	3,228,200	3,137,100	3,026,500
19호봉		4,915,600	4,625,400	4,475,400	4,069,500	3,709,500	3,410,000	3,287,300	3,185,000	3,084,200
20호봉		4,981,600	4,693,800	4,541,700	4,133,100	3,769,200	3,467,900	3,346,900	3,231,200	3,132,800
21호봉		5,046,600	4,755,300	4,606,600	4,191,900	3,829,900	3,519,900	3,400,000	3,286,400	3,187,500
22호봉		5,109,000	4,813,100	4,666,500	4,248,900	3,882,600	3,572,300	3,448,100	3,348,900	3,250,400
23호봉		5,167,300	4,871,000	4,723,400	4,302,900	3,933,200	3,620,300	3,503,300	3,413,700	3,312,600
24호봉		5,222,100	4,926,400	4,776,700	4,350,600	3,981,600	3,667,600	3,550,200	3,473,800	3,373,900
25호봉		5,275,700	4,977,200	4,829,700	4,397,900	4,033,200	3,712,500	3,599,400	3,529,200	3,435,600
26호봉		5,319,600	5,026,700	4,876,000	4,444,100	4,078,800	3,753,700	3,643,300	3,577,800	3,492,800
27호봉		5,364,300	5,069,300	4,919,500	4,483,000	4,115,900	3,789,100	3,678,800	3,625,500	3,540,400
28호봉		5,403,200	5,102,600	4,958,600	4,522,500	4,154,900	3,824,000	3,703,300	3,658,400	3,575,900
29호봉		5,433,100	5,133,500	4,991,400	4,558,700	4,191,200	3,857,700	3,723,300	3,695,300	3,613,000
30호봉		5,458,200	5,165,600	5,026,100	4,592,600	4,224,000	3,889,600	3,743,500	3,717,900	3,645,800
31호봉			5,178,600	5,058,200	4,623,100	4,256,000	3,920,600	3,766,100	3,756,200	3,671,300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축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3,156,2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급여비용 내에서 종사자와의 사적계약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장기요양요원 보수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수가 지급체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도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인 장기요양기관장과 근로자인 장기요양요원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지고 있으며, 법률로써 적정 인건비 기준을 규율하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